**정 관**

|  |  |  |
| --- | --- | --- |
| 서기 2017년  6월  1일  제     정 |  |  |
| 서기 2019년 3월 29일 개 정 |  |  |
| 서기 2021년 3월 18일 개 정 |  |  |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회사)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ORION Corp.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매매에 관한 사업  
2.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매매에 관한 사업  
3. 식품소분, 판매업  
4. 수태 기타 과자원료의 제조 및 매매에 관한 사업  
5. 축산 낙농 및 그 제품의 가공, 제조 및 매매에 관한 사업  
6. 사료의 제조 및 매매에 관한 사업  
7. 영림, 영농 및 원예  
8. 포장재료 제조 매매업 및 인쇄업  
9. 군수물자 생산가공 및 납품업  
10.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판매업  
11. 부동산 개발, 임대 및 공급, 매매, 분양업, 기타 관련 서비스업  
12. 투자에 관한 사업  
13. 운수 및 창고 보관업  
14. 합성수지 문구류 및 완구류의 제조·판매업  
15. 식품제조기술 국내외 용역업  
16.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17. 체육시설 및 임대업  
18. 선물거래에 의한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및 위임매매  
19. 음식점업, 주점업 및 숙박업  
20. 체육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21.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및 관련 유통업  
24.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컨텐츠, 정보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  
25. 건설업 및 공사업  
26. 교육관련서비스업  
27. 도소매업 및 중개업  
28.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식량작물 재배업 재배업 , 도·소매업 소매업  
29. 채소 , 화훼작물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재배업 , 도·소매업 소매업  
30. 보관 및 창고업 창고업  
31.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제조업 , 도·소매업  
32. 골판지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골판지상자 골판지상자 제조업 , 도·소매업  
33. 종이포대 종이포대 , 판지상자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종이용기 제조업 제조업 , 도·소매업  
34. 인쇄업 인쇄업  
35. 플라스틱 플라스틱 필름 , 시트 및 판제조업 판제조업 , 도·소매업 소매업  
36. 포장용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도·소매업

37. 바이오의약품 및 의/생명과학 제품 일체의 개발, 제조, 상업화, 유통, 수출 및 판매사업

38. 천연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제조, 수출 및

판매업

39.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성과의 대여업,

연구개발 노하우의 용역사업 및 판매업, 제조 인허가의 취득 및 대여업  
40. 전 각호에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 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orionworl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8,000만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4,000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5%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의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성과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상법 및 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의 2(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5조 (기준일)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6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이사회의 결의에 결의에 의해 사채를 발행할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발행되어 상환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는 경우, 새로이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액면과 그 기발행되어 존속하고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을 합산한 금액은 3천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발행되어 상환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가 있는 경우,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과 그 기발행되어 존속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액면을 합산한 금액은 3천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20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서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여 주주총회 진행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하로 하며,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이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적어도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의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임기와 같이한다.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40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 회사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정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삭제>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3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6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별도로 정한 경영자평가보상규정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8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있다.  
  
제6장 계 산  
  
제49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  
⑥ 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액)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5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기)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8일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최초의 사업년도)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정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특례)  
정관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 회사 설립 전 분할 전 회사인 주식회사 오리온(회사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이하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4조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대한 특례)  
정관 제 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분할 전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조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 및 자본금 등)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할 주식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는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